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 A안과 B안 비교 (2009.6.23)

조문	A안	B안	비고
전문	<p>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비롯하여 자유와 평등에 관한 천부적 인권과 다양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학교 안과 밖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양심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신체와 행동의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은 학업성적, 주거지역이나 형태, 가족형태, 경제력, 출신지역이나 학교의 종류, 학년, 성별, 장애, 종교, 인종, 피부색, 용모,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학습과 자아실현에 필요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울러 학생은 자신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학교와 사회로부터 적절하고 신속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그리고 주민들은 신나는 공교육과 자주적인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인정하며, 학생들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 관용, 박애, 헌신, 협력과 배려의 가치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무엇보다도 학생은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다.</p>	<p><삭제></p>	<p>전문 삭제</p>
제201조	<p>제201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학교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p>	<p>제201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학교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삭제></p>	<p>제2항 삭제</p>
제202조	<p>제202조(학생의 의사결정권) ① (생략) ② 재량활동, 선택과목, 보충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기타평가(사설모의고사)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학교가 교복, 앨범, 체육복 등 선정</p>	<p>제202조(학생의 의사결정권) ① (생략) ② 재량활동, 선택과목, 보충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기타평가(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생략) ④ 학교가 교복, 앨범, 체육복 등 선정</p>	<p>문구 삭제 또는 수정</p>

	할 경우 <u>반드시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	할 경우 <u>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	
제204조	제204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u>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u> ② (생략) ③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u>어떠한 노동도 강요할 수 없다.</u> ④ <u>학생은 두발의 자유를 갖는다.</u>	제204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u>적법하고 정당한 근거 없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u> ② (생략) ③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u>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u> ④ <u>두발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u>	문구 수정
제205조	제205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① (생략) ② 학생에게 <u>반성문이나 서약서, 지문날인, 서명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u> ③ 교직원은 학생의 인격에 반하는 <u>대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u>	제205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① (생략) ② 학생에게 <u>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u> ③ 교직원이 <u>학생에게 대답을 요구할 경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u>	문구 삭제 또는 수정
제206조	제206조(표현, 집회, 시위의 자유) ① 학생은 <u>표현, 집회, 시위의 자유를</u> 가지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206조(표현,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u>표현과 집회의 자유를</u> 가지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u>원칙적으로</u>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문구 삭제 또는 수정
제207조	제207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① (생략) ② 교직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③ 교직원은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지 <u>않아야 한다.</u> ④ 학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u>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u>	제207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① (생략) ② 교직원은 <u>학생의 동의 없이</u>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③ 교직원은 학생들의 성적을 <u>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u> ④ 학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u>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u>	문구 삭제 또는 수정
제208조	제208조(정보접근권) ① (생략) ② (생략) ③ 학생은 <u>학교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u> ④ (생략)	제208조(정보접근권) ① (생략) ② (생략) ③ <삭제> ③ (생략)	제3항 삭제 제4항을 제3항으로 이동
제301조	제301조(평등권) ① <u>모든 학생은 평등하다.</u> ② (생략) ③ (생략)	제301조(평등권) ① <u>학생은 모두 평등하다.</u> ② (생략) ③ (생략)	자구 수정
제302조	제302조(차별의 금지) ① (생략) ②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u>학교로</u>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학생의 용모, <u>출신지역이나 출신학</u>	제302조(차별의 금지) ① (생략) ②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u>학교나 출신 학교로</u>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학생의 용모, <u>출신지역, 종교, 장애</u>	「출신학교」를 제5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교,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401조	제401조(교육권) ① (생략) ② 학생에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권장하여서는 안 된다. ③ (생략) ④ 수업할 때 학생들의 질문기회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⑤ (생략) ⑥ (생략)	제401조(교육권) ① (생략) ② 학교와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권장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수업할 때 학생들의 질문기회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⑤ (생략) ⑥ (생략)	문구 수정
제404조	제404조(안전권) ① (생략) ② 학생안전을 이유로 학생활동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자살을 예방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04조(안전권) ① (생략) ② <삭제>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자살을 예방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삭제
제405조	제405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학교는 생리로 인한 공결제도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며 널리 교육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405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삭제> ④ (생략)	제4항 삭제
제406조	제406조(적법절차와 권리실현절차의 권리) ① (생략) ② (생략) ③ 학교규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며,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2. 학생은 학생관련 제 규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학교규정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야 하고,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 4.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 인격모독 등의 심리적 폭력,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고 학	제406조(적법절차의 권리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학교규정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야 하고,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제3항을 제3호의 내용으로만 수정

	생자치기구의 개정발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407조	제407조(보호를 받을 권리)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서 등 외부기관과 신속하고 적절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07조(보호를 받을 권리)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삭제>	제4항 삭제
제501조	제501조(학교의 학생인권보장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학부모위원, 시민단체위원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시민단체위원이 위원장이 되며 관련 업무 교직원이 간사가 된다. ⑤ 학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를 위한 정책연구와 중장기 학교정책 수립 2.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 4.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 5.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과 분쟁조정 6.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7.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⑥ 학교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학교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501조(학교의 학생인권보장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삭제> ④ <삭제> ⑤ 학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를 위한 정책연구와 중장기 학교정책 수립 2.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 4.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 5.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과 분쟁조정 6.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7.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련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의 권고와 의견 표명 8.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⑥ <삭제> ⑦ <삭제>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삭제 제5항 신설
제502조	제502조(교육청의 학생인권보장위원회) ① (생략)	제502조(교육청의 학생인권보장위원회) ① (생략)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p>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하며, 관련 업무 장학사를 간사로 한다.</p> <p>④ 교육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인권과 권리를 위한 정책연구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2.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 4.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 5. 학생인권과 권리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그리고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6.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과 분쟁조정 7.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p>8.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p> <p>⑤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육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교육청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p> <p>⑦ 교육청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삭제></p> <p>③ 교육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인권과 권리를 위한 정책연구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2.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 4.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 5. 학생인권과 권리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그리고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6.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과 분쟁조정 7.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8.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련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의 권고와 의견 표명 9.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 <p>⑤ <삭제></p> <p>⑥ <삭제></p> <p>⑦ <삭제></p>	<p>삭제</p> <p>제4항 제8호 신설</p>
제503조	<p>제503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p> <p>① 학교위원회와 교육청위원회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p>	제503조 <삭제>	제501조와 제502조에 반영

	<p>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학교위원회나 교육청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위원회나 교육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그리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p>		
제505조	<p>제505조(인권자료실)</p> <p>① 교육청위원회는 도교육청 안에 인권자료실을 둔다.</p> <p>② 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p>	<p>제505조(인권자료실)</p> <p>교육청위원회는 도교육청 안에 인권자료실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삭제></p>	제2항 삭제